2021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

경인지방우정청 시행 2021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**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시 · 장소,**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9일

경인지방우정청장

1.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채용우체국	채용직급	채용인원	합격인원	합격자 응시번호
포 천	우정9급(계리) 공무원	1명	2명	021001 021002

2. 필기시험 일정 및 대상

가. 응시대상 : 서류전형(1차 시험) 합격자

나. 시험일시

시험일자	시험시간	비 고
2021. 3. 20.(토)	**10:00~10:40**	**입실시간 : 09시20분** **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**

※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장소(학교)가 폐쇄될 경우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며, 변경장소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드리겠습니다.

3. 필기시험 장소

가. 장 소 : **송양중학교**

나. 주 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08 (낙양동)

4. 응시자 준수사항

《 일반사항 》

가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손 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[코로나 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붙임 1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 ※ 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

라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(차량탑승 수험생은 정문 하차 후 개별 출입)

마. **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**할 수 있으며, **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
-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,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,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바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**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)을 **소지해야** 합니다.

※ **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 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**입니다.

사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아. 시험시간 중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 카메라, MP3 플레이어, DMB 플레이어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자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,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・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차. **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**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**자제**하여 주시고, **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**에게 있습니다.

-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타. **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**, 배부된 **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파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《 답안지 기재 및 표기 》

가. 득점은 OCR스캐너 판독기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,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「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」(**사인펜에 "컴퓨터용"이라고 표시**)을 사용하여 반드시 〈보기〉 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 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〈보기〉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

※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

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 편철과 표지의 과목순서 간의 일치 여부, 문제 누락·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라.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**"●"로 표기**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
-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▮▮▮▮▮)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《 부정행위 등 금지 》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**

○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○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○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○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○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○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**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**

○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○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○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○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다.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(기재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

필기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((http://www.koreapost.go.kr/)

○ 정답가안 공개: 2021. 3. 20.(토)

○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답안 공개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

6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(http://www.koreapost.go.kr/gi)에 게시합니다.

○ **합격자 발표일: 2021. 4. 27.(화)**

7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등 안내

가.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안내

-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즉각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정밀검진을 받으시기 바라며,
- 보건 당국의 관리대상자 외에도 단순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최근 14일 이내 해외 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입국 이력을 팩스를 통하여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필요할 경우 보건·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·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진신고 등록방법: [붙임 2] 작성 팩스(0505-005-1259) 송부

※ 자진신고 등록기간: 2021. 3. 12.(금) ~ 3. 19.(금) 18:00

나.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

- 신청 방법: 경인지방우정청 유선신청 (☎ 031-8014-3243)
- 사전 신청 기간: 2021. 3. 12.(금) ~ 3. 19.(금) 18:00

【붙임 1】

<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>

▼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개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
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
▼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▼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▼ 개인 필기구, 음료수를 개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
▼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, 덧신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코·입 노출 금지)해야 하며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▼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2】

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응시자 사전 문진표

모집단위 우체국	응시번호	성명
포천우체국		
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또는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사전통보하였습니까? ☐ 예 / ☐ 아니오		

현재 증상		☐ 발열 ☐ 가래 ☐ 기침 ☐ 오한 ☐ 인후통 ☐ 근육통 ☐ 호흡곤란 ☐ 기타 증상 ( ) ☐ 증상발현시기 (2021년 월 일)	☐ 없음
해열제 복용여부		☐ 예 (마지막 복용시간 :)	☐ 아니오
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여부		☐ 예(검사일:2021년 월 일 / ☐음성 ☐양성)	☐ 아니오
3. 6. ~ 3.19.	**해외방문 이력**	☐ 중국 ☐ 미국 ☐ 유럽 ☐ 기타( ) ☐ 입국일자 (2021년 월 일)	☐ 없음
	지역방문 이력	☐ 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☐ 기타( ) ☐ 방문일자 (2021년 월 일)	☐ 없음
	확진자 접촉	☐ 예 (환자와의 관계 :)	☐ 없음

*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

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닉·은폐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응시자 성명 : (서명)